

# 탄소소재 적용 방위산업 육성 사업 시행계획 공고

전북지역 탄소소재 적용 중소·중견기업의 중장기 사업화 전략 확보 및 상용화 성공모델 제시를 위한 탄소소재 적용 방위산업육성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북도내 탄소 복합소재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

## 1. 사업개요

- 전북지역 탄소소재 적용 탄소소재적용 방위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의 중장기 사업화 전략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제작지원 수요를 접수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 강화 및 탄소소재 적용 도내 산업육성 확대
- 지원규모 : 금450,000천원
  - 공정개선 : 1개 기업, 최대 300,000 천원 이내  
(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20%이상, 단 현금부담은 10% 이상)
  - 시제품 제작 : 3개 기업, 최대 50,000천원 이내  
(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20%이상, 단 현금부담은 10% 이상)
- ※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수행기간
  - 공정개선 :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
  - 시제품 제작 :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

## 2. 지원내용

- 전북지역 내 탄소소재 적용 관련 중소·중견기업 중 탄소소재 적용 방위 산업관련 제품을 제조,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“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

지원분야

- 공정개선 : 탄소소재 활용 방위산업 적용 제품 제조,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설비개선 등 공정개선 지원
- 시제품 제작 : 탄소(섬유),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하여 방위산업 적용되고 있는 또는 적용 예정 부품 발굴 및 성형, 가공, 시공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
**3. 신청자격**

신청기업

- 전북지역 내 탄소소재 적용 방위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
  - 지원분야 사업 영위 도내 기업 중 <최근2년> 탄소소재 공정라인 기투자 및 신규투자 기업으로 한정
  - 기업 전략기술에 대한 전략제품 혹은 공정기술개발을 요하는 기업
  - 단기적으로 공정개선을 통한 제품개발을 요하는 기업
  - 긴급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요하는 기업
  - 사업종료 후 사업성으로 매출과 신규고용창출 발생을 목표하는 기업
  - 자체 R&D혁신역량이 있고 시장창출 능력 및 신산업창출능력이 있는 기업 우선 지원

**4. 신청기간 및 방법**

신청기간 : 2022년 3월 16일(수) ~ 2021년 3월 25일(금)

- 접수 후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기업 및 부품 선정평가 진행

신청방법 :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술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

- 이메일 접수

사업 공고처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(<https://www.kitech.re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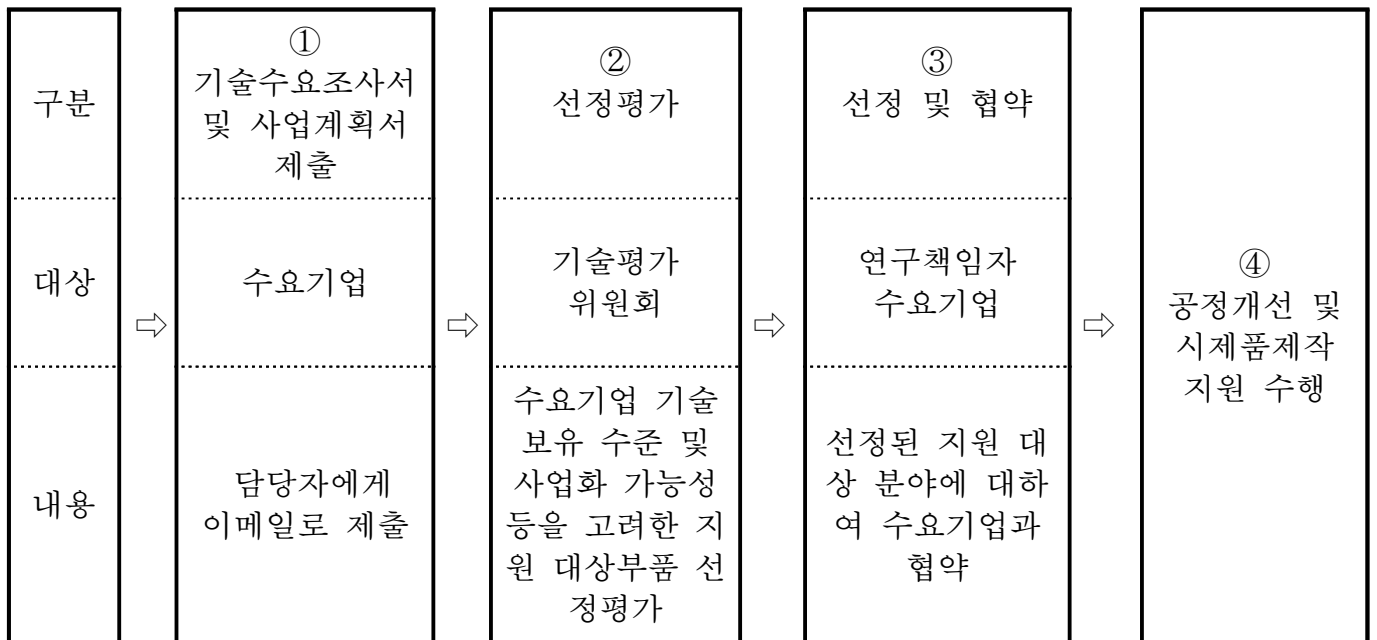
접수 및 문의처

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두영 (063-210-3770, [duychoi@kitech.re.kr](mailto:duychoi@kitech.re.kr))
- 위치 : (54853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지정서식	서식 1. 기업지원 지원신청서	필수
	서식 2.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필수
기타서류	사업자등록증	필수
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필수
	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(2020년~2021년분) *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	필수
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(견적서, 비교견적서, 도면 및 계약서 등)	필수
	기타 제품설명 또는 실적 증빙 관련자료	필요 시

**5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**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① 사업계획서 접수
  - 수요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- ② 선정평가 : 기술평가위원회
  -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온/오프라인 평가 진행 (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/서면 평가)
  - 수요기업 기술보유 수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개선 및 시제품제작 지원대상 평가
- ③ 선정 및 협약 : 연구책임자, 수요기업
  - 선정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수요기업과 협약 체결
  - 협약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별도 통보
- ④ 공정개선·시제품제작 지원 수행 및 결과보고 : 연구책임자, 수요기업
  -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및 시제품제작 종료 보고서 제출

## 6. 기타사항

-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
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될 수 있음
-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(매출, 수출, 고용 등) 등의 자료요청 시 선정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 (공공재정 환수법)이 시행(2020.1.1.)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
- 공공재정지급금(지원금, 출연금 등)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이 환수(이자 포함)되고,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
\* 제재부가금

- 허위 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×5
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×3
- 목적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×2

## 6. 문의처

### □ 사업 총괄 및 안내

담당부서	담당자	E-MAIL
한국생산기술연구원	최두영 수석연구원	duychoi@kitech.re.kr

붙임.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1부. 끝.